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3 선고 2019가단2193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6. 14 선고 2020나220462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3 선고 2019가단21934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

변론 종결 2020. 10. 15

판결 선고 2020. 12. 3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그 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12. 17.부터, 나머지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10. 4. 20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남편인 C은 2005년경 남양주시 D 임야 약 2,200평(이하 같은 리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)을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면서 E 내 지 F 토지를 분할하였는데,그 중 G 토지는 원고의 남편인 H에게 매도하여 2006. 10.9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,당시 위 각 분할 토지 중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지분 에관하여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.

나. C은 2009년경 H에게 G 토지에 인접한 I 소유의 J 전 1,296㎡ 중 일부를 매수하 여,일부는 H이 매수하여 G 토지에 합병하고, 나머지는 이 도로로 사용하자고 제안하 여 H의 동의를 얻은 다음, 2009. 10. 29. H의 명의로 I와 사이에 I가 H에게 J 전 1,296㎡ 중 443㎡를 양도하는 대신, H은 I에게 E 내지 F의 도로부지 부분에 대한 사용을 승 낙하고, J 전 1,296㎡ 중 나머지 부분에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후 원고는 2009. 12. 16. 피고에게 2,000만 원을 송금하였다.

다.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J 전 1,296㎡는 2010. 4.경 J 전 443㎡와 K 전 853㎡ 로 분할되었고, C은 2010. 4. 5. H의 명의로 I의 상속인인 L과 사이에 J 전 443㎡에 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2010. 4. 22.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원고는 2010. 4. 19. 피고에게 2,000만 원을 송금하였다.

라. 한편,이후 G 토지는 M 임야 593㎡로 등록전환된 후 2010. 7. 19. J 전 443㎡와 함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J 대 1,036㎡로 합병되었고,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7,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,이후 J 대 1,036㎡는 H의 주택부지인 J 대 855㎡(이 중 합병 전 J 전 443㎡의 일부이던 262㎡ 부분을 '이 사건 토지부분'이라 한다)와 도로부 지인 N 대 181㎡ 로 분할되었고, 그 중 N 대 181㎡ 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내지 22호증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원고는,C이 원고 측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의 매입업무를 대행하면서 I 측에게 매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에게 매수대금이 4,000만 원으로 이를I 측에게 지급한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가 I 측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2019.12. 16.과 2010. 4. 19. 피고에게 합계 4,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인바, 이는 원고가 피고 측의 기망에 의하여 속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으로서 민법 제110조 또는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하므로,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,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가 2019. 12. 16.과 2010. 4. 19. 피고에게 송금한 4,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지,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,C은 I로부터 분할 전 J 전 1,296㎡ 중 443㎡ 를 양수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H에게 매도하고,2010. 7. 19. 그 매도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원고의 위 주 장은 나아가 다른 점들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정효채